



전임교원임용규칙

규정번호	3-2-1
제정일자	2008.06.16
개정일자	2012.03.01
개정번호	Ver .9 총페이지 68

제정	2008년	6월	16일
개정	2008년	11월	1일
개정	2009년	3월	1일
개정	2010년	3월	1일
개정	2011년	1월	1일
개정	2011년	3월	1일
개정	2011년	5월	13일
개정	2011년	7월	8일
개정	2012년	2월	13일
개정	2012년	3월	1일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양미래대학(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교원인사규정 제16조제6항에 의거 교원의 신규임용 및 재임용, 승진임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7.8>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교원인사규정 제4조가 규정하는 본 대학의 전임교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임용계약) ① 총장은 임용 대상자와 협의하여 교원인사규정 제24조에 따라 개별적으로 임용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2002년 1월 1일 이전에 임용된 교원의 재임용은 교원인사규정 제25조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임용계약은 교원인사규정 제24조의 계약조건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작성한다 [별표36]. 단, 필요 시 [별표 36]을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9.3.1>

제4조(임용계약을 위한 근무조건의 구분) 교원인사규정 제16조제3항에 의거하여 임용계약에 적용하는 교원의 근무조건은, 주당 9시간 이상(산학협력중점교원은 6시간 이하)의 본 대학 강의를 담당하고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본 대학에서 요구하는 업적 및 성과를 수행하는 것을 포함한다.<개정 2012.2.13>

1. 교육분야, 연구분야, 봉사분야, 산학협력분야의 업무 및 본 대학이 요구하는 추가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하 이 근무조건으로 임용되는 교원을 “일반교원“이라 한다.)<개정 2009.3.1, 2011.7.8, 2012.2.13>

2. 교육분야, 봉사분야, 산학협력분야의 업무 및 본 대학이 요구하는 추가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이하 이 근무조건으로 임용되는 교원을 “산학협력중점교원“이라 한다.) 단, 산학협력중점교원은 신규 임용되는 채용형과 일반교원 중에서 지정되는 지정형으로 구분하되, 지정형에 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이하 이 규칙에서 산학협력중점교원이라 함은 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원을 말한다.)<신설 2012.2.13>

3. 교육분야, 봉사분야, 산학협력분야의 업무 및 본 대학이 요구하는 추가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보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근무조건으로 임용되는 교원을 “산업체경력교원“이라 한다.)<개정 2009.3.1, 2011.7.8, 2012.2.13>

4. 교육분야, 봉사분야, 산학협력분야 업무를 담당하고 본 대학이 요구하는 추가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보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근무조건으로 임용되는 교원을 “실습교원“이라 한다.)<개정 2009.3.1, 2011.7.8, 2012.2.13>

5. 강의를 담당하고 본 대학이 요구하는 추가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보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근무조건으로 임용되는 교원을 “강의교원“이라 한다.)<개정 2009.3.1, 2011.7.8, 2012.2.13>

제5조(위약에 대한 조치) 교원이 계약기간 중에 제반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 기 지급한 보수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진행 중인 교내 연구비는 전액 환수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총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연구실적물 등의 인정범위) ① 교원의 신규임용, 재임용, 승진임용에 적용되는 연구실적물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급 이상 논문에 한하여 인정하며, 재임용 시 연구실적물을 대체할 수 있는 산학협력실적물은 [별표35-1]과 같다. 단, 재임용 자격으로 산학협력실적물을 연구실적물 기준의 최대 1/2까지 대체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09.3.1, 2011.7.8, 2012.2.13>

② 연구실적물 및 산학협력실적물의 인정범위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개정 2012.2.13.>

③ 제1항에 불구하고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재임용 시 산학협력실적물을 연구실적물 기준의 100%까지 대체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12.2.13.>

제7조(연구실적물 등의 인정환산율) ① 연구실적물의 인정환산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2.13>

1. 1인 연구실적물 : 100%
2. 2인 공동 연구실적물 : 70%
3. 3인 공동 연구실적물 : 50%
4. 4인 공동 연구실적물 : 30% <개정 2012.2.13>
5. 5인 이상 공동 연구실적물 : (100/전체연구자수)%(소수점 이하 절사)<신설 2012.2.13>

② 삭제 <2012.2.13>

③ 산학협력실적물의 인정환산율은 [별표35-1]을 따른다(소수점 이하 절사).<신설 2012.2.13>

제8조(학부(과) 인사위원회) 교원의 재임용 및 승진임용 신청자에 대한 학부(과) 해당사항 업적을 평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학부(과) 인사위원회를 구성한다.

1. 학부(과) 인사위원회는 필요시 한시적으로 구성하여 활동하며 사안 종결 시 자동 해체된다.

2. 학부(과)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학부(과)장(본인이 피심사자인 경우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으로 하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한다. 단, 전임교원이 5인 미만인 학부(과)는 피심사자를 제외한 전임교원 전원으로 학부(과) 인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제 2 장 신규임용

제9조(채용규모 및 분야) 신규로 임용할 교원의 인원수와 분야는 본 대학의 발전 방향과 교육과정, 교원확보율, 예산 등을 고려하여 총장이 정한다.

제10조(직급) 신규임용 교원의 직급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제11조(신규임용 절차) 교원의 신규임용 세부절차는 [별표1]에 따른다.<개정 2008.11.1>

제12조(채용공고 및 지원자 접수) ① 교원의 신규임용은 채용분야, 채용인원, 지원자격, 심사기준 등을 명시하여 15일 이상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3.1>

② 지원자의 접수는 인터넷접수와 서류접수로 구분하며 서류접수는 인터넷접수를 완료한 자로 한다. 서류접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등으로 한다.

제13조(지원자격) ① 신규임용의 지원자격은 교원인사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어야하며[별표2] 교원인사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로 한다. 단, 산학협력중점교원은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로서 산업체 경력이 10년(산업체경력교원은 15년)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9.3.1, 2012.2.13>

② 필요한 경우 채용분야별 지원자격을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허가를 얻어 추가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1.7.8>

③ 외국인의 경우는 제1항 내지 제2항에 추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제14조(심사기준) ① 신규임용의 심사기준은 제4조가 규정하는 교원의 근무조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일반교원 : [별표3]일반교원 신규임용 심사기준 <개정 2008.11.1>
2. 산학협력중점교원 및 산업체경력교원 : [별표4]산학협력중점교원 및 산업체경력교원 신규임용 심사기준 <개정 2008.11.1, 2012.2.13>
3. 실습교원 : [별표5]실습교원 신규임용 심사기준 <개정 2008.11.1>
4. 강의교원 : [별표3-1]강의교원 신규임용 심사기준 <신설 2008.11.1>

② 제1항의 심사기준에서 전공일치도, 전공우수성 및 잠재역량에 대한 심사(이하 “학부(과) 기준 심사“라 한다)기준 또는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의 강의능력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학부(과)가 정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허가를 거쳐 확정한다.<개정 2011.7.8>

1. 일반교원 및 강의교원의 학부(과)기준 심사 : [별표8-1], [별표8-2] <개정 2011.7.8>
2. 산학협력중점교원 및 산업체경력교원의 학부(과)기준 심사 : [별표8-3] <개정 2011.7.8., 2012.2.13>
3. 실습교원의 학부(과)기준 심사 : [별표8-1], [별표8-2], [별표8-3]을 준용하여 따로 정한다. <개정 2011.7.8>
4. 강의능력에 대한 심사기준 : [별표10], [별표10-1] <개정 2011.7.8>

③ 외국인의 경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사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5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신규임용과 관련된 심사를 위해 채용분야별로 채용심사위원회와 면접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채용심사위원회는 채용분야의 학부(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3인 이상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사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본 대학 소속이 아닌 자로 한다.

③ 면접심사위원회는 채용분야의 학부(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6인 이상의 본 대학 소속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사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채

용분야 학부(과) 소속이 아닌 자로 하며 강의교원의 경우는 총장이 위촉하는 4인 이상의 채용분야 학부(과) 소속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총장은 필요한 경우 채용분야 학부(과)장이 아닌 자를 위원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8.11.1>

④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장을 포함한 심사위원을 본 대학 소속이 아닌 자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8.11.1>

제16조(심사절차) ① 신규임용 심사는 기초심사, 전공심사, 면접심사의 단계를 통합하여 지원자격심사, 서류심사, 면접심사 단계로 실시한다.

② 지원자격심사는 구비서류를 접수한 지원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13조에 의거하여 심사한다.
2. 본 대학 소속 채용심사위원이 심사한다[별표6].

③ 서류심사는 지원자격심사를 통과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학교공통기준 심사와 학부(과)기준 심사로 구분한다.
2. 학교공통기준 심사는 제14조제1항이 규정하는 신규임용 심사기준 중 학교공통기준의 항목별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한다[별표7].
3. 학부(과)기준 심사는 제14조제2항이 규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다[별표8].
4. 학교공통기준 심사는 본 대학 소속 채용심사위원이 심사하며 학부(과)기준 심사는 채용심사위원회가 심사한다. 단 심사위원의 평가점수 가중치는 각각 1로 동일하다.
5. 학부(과)기준 심사에서 전공일치도 항목 평가에 대하여 심사위원 전원이 C 이하로 평가하는 경우 해당 지원자는 채용심사에서 탈락한다. <개정 2008.11.1>
6. 채용인원의 5배수 이내를 서류심사 통과자로 선정한다[별표9].

④ 면접심사는 서류심사를 통과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면접심사위원회가 강의능력과 인성 등을 심사한다.<개정 2011.7.8>
2. [별표10]신규임용 면접심사위원 심사표와 [별표13]면접심사위원장 심사의견서에 따라 평가한다. <개정 2008.11.1>
3. 공개강의 또는 세미나, 공개실습, 면담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채용분야 소속 심사위원과 비소속 심사위원의 평가점수 가중치는 각각 1과 0.5로 한다. 단, 강의교원의 경우 심사위원의 가중치는 1로 한다. <개정 2008.11.1>
4. 심사위원 전원이 C 이하로 평가하거나 면접심사에 불참하는 경우 해당 지원자는 채용심사에서 탈락한다. <개정 2008.11.1>
5. 채용인원의 3배수 이내를 면접심사 통과자로 선정한다[별표11].<개정 2009.3.1>

제17조(임용제청) ① 총장은 면접심사를 통과한 자 가운데 [별표12]신규임용 심사 집계표와 [별표13]면접심사위원장 심사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신규임용 제청 후보자를 선정하고 교원인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별표14].<개정 2011.7.8>

② 교원인사위원회는 신규임용 제청 후보자에 대한 학력 및 경력사항, 연구실적물 등의 심사 자료와 신규임용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참작하여 무기명 표결에 의하여 신규임용 동의 여부를 의결한다.

③ 총장은 신규임용 제청 후보자에 대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사장에게 신규임용을 제청한다.

④ 신규임용 제청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한다.

1. 이력서(본 대학 소정양식)

2. 인사기록카드(본 대학 소정양식)
3.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
4. 임용신체검사서(종합병원 발행)
5. 신원진술서(소정양식)
6. 기본증명서
7. 기타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18조(구비서류) ① 지원자는 채용심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2. 성적증명서(고등학교 경우는 생활기록부)
3. 졸업증명서
4.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5. 연구실적물 목록 및 실적물
6. 자격증

②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는 한글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총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 이외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제출서류 인정) ① 제출서류는 원본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의 경우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② 학력 및 경력사항, 연구실적물 등은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심사한다.

③ 연구실적물은 임용예정일을 기준으로 최근 4년 이내의 것에 한하여 심사한다.

제 3 장 재임용

제20조(임용기간) ① 재임용 또는 계약제 임용(이하 “재임용“이라 한다)에 따른 교원의 임용기간은 교원인사규정 제16조제2항이 규정하는 임용 계약조건에 따른다.

② 공무로 국외파견 또는 국외 출장증인자의 파견 또는 출장 중에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 파견 또는 출장 잔여기간까지를 임용기간으로 본다.

③ 재임 중에 승진 또는 강임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다시 임용기간을 정한다.

④ 법인정관에 의거 휴직하는 경우에는 휴직기간이 임용기간에 추가되는 것으로 본다.

⑤ 임용 계약기간 만료 전에 정년이 도래한 자에 대하여는 임용장에 정년 시까지 임용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1조(재임용 절차) 교원의 재임용 절차는 [별표15]와 같다.

제22조(재임용 자격) ① 일반교원의 재임용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해직급에서 연구 발표한 100% 이상의 연구실적물. 단, 직전 임용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에는 70%이상의 연구실적물

2. 당해직급에서 7일 이상 전공과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산업체에서 연수한 실적

② 실습교원의 재임용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해직급에서 7일 이상 전공과 관련이 있는 산업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연수한 실적

2. [별표20-1]실습교원에 대한 학부(과) 실습관리 평가표(매학기마다 학부(과)에서 위촉한 3인 이상의 평가위원이 무기명으로 평가해서 학기종료후 교학처에 제출) 인정점수 평균 70점 이상

3. [별표20]실습교원 재임용에 대한 학부(과) 평가표 인정점수 70점 이상

③ 산학협력중점교원 및 산업체경력교원의 재임용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2.13>

1. 당해직급에서 7일 이상 전공과 관련이 있는 산업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연수한 실적

2. [별표19]산학협력중점교원 및 산업체경력교원 재임용에 대한 학부(과) 평가표 인정점수 70점 이상<개정 2012.2.13>

④ 강의교원의 재임용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외국인교원은 이를 면제할 수 있다.

1. 당해직급에서 7일 이상 전공과 관련이 있는 산업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연수한 실적

2. 삭제 <2012.2.13>

3. [별표21]강의교원 재임용에 대한 학부(과) 평가표 인정점수 70점 이상

[전문개정 2011.3.1]

제23조(재임용 기준) ① 일반교원의 재임용 평가점수는 현 임용기간 중의 실적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100점 만점으로 한다. 단, 총장은 10점 이내의 가점을 줄 수 있다.

1. [별표26-1]에 의한 매 학년도별 교수업적평가 등급별 점수를 평균한 점수 : 50점. 단, 이 경우에는 교수업적평가의 개인평가 부분만 적용한다.<개정 2012.2.13>

2. 학부(과) 인사위원회의 학부(과) 평가점수 : 30점

3. 교원인사위원회의 학교 평가점수 : 20점

② 실습교원, 산학협력중점교원, 산업체경력교원 및 강의교원의 재임용 평가점수는 현 임용기간 중의 실적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100점 만점으로 한다. 단, 총장은 10점 이내의 가점을 줄 수 있다.<개정 2012.2.13>

1. [별표26-1]에 의한 매 학년도별 교수업적평가 등급별 점수를 평균한 점수 : 30점. 단, 이 경우에는 교수업적평가의 개인평가 부분만 적용한다.<개정 2012.2.13>

2. 학부(과) 인사위원회의 학부(과) 평가점수 : 50점

3. 교원인사위원회의 학교 평가점수 : 20점

③ 재임용하는 일반교원 및 실습교원은 재임용 평가점수가 70점 이상, 산학협력중점교원, 산업체경력교원 및 강의교원은 재임용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2.2.13>

④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의 교수업적평가 등급은 제4조 각 호에서 정한 교원의 구분별로 적용한다. 단, 산학협력중점교원과 산업체경력교원은 통합하여 적용한다. <신설 2012.2.13>

[전문개정 2011.3.1]

제24조(학부(과) 인사위원회 평가) 교원의 재임용 평가를 위하여 학부(과) 인사위원회는 재임용에 대한 학부(과) 평가표를 무기명으로 작성하여 교학처에 제출한다. 일반교원, 산학협력중점교원, 산업체경력교원, 실습교원, 강의교원의 평가표는 각각 [별표18], [별표18-1], [별표19], [별표20], [별표21]를 사용한다.<개정 2009.3.1, 2012.2.13>

제24조의1(교원 인사위원회 평가) 교원의 재임용 평가를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는 재임용에 대한 교원인사위원회 평가표를 무기명으로 작성하여 교학처에 제출한다. 일반교원, 산학협력중점교원, 산업체경력교원, 실습교원, 강의교원의 평가표는 각각 [별표22], [별표22-1], [별표23], [별표24], [별표25]를 사용한다.<신설 2009.3.1, 2012.2.13>

제 4 장 승진임용

제25조(승진임용 절차) 교원의 승진임용 절차는 [별표27]과 같다.

제26조(승진임용 자격) ① 승진 임용하는 교원은 교원인사규정 제28조의 규정이 정하는 최저 승진 소요연수를 충족하여야 한다.

② 현 직급 재직기간 중 매 학년도별 교수업적평가의 등위백분율 평균이 상위 50%이내(단, 강의교원은 제외)이어야 한다. <개정 2009.3.1, 2012.2.13>

제26조의1(승진임용의 제한) ① 강의교원의 임용은 전임강사로 제한한다.<신설 2009.3.1>

② 산학협력중점교원, 산업체경력교원, 실습교원이 교수로 승진한 경우 근무조건은 제4조 제1호에 따른다.<신설 2009.3.1, 2012.2.13>

제27조(승진임용 기준) ① 승진 임용하는 교원은 현 직급 재직 기간 중의 실적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1. 교원 승진임용에 대한 학부(과)종합평가표에서 승진임용 찬성 의견서 취득
2.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된 학술지급 이상의 우수학술지에 책임저자로 논문 1편 이상 게재하거나 대학(또는 산학협력단)명의로 1억원 이상의 연구과제를 과제책임자로 수탁<개정 2009.3.1, 2012.2.13.>

3. 실적평가 세부 기준에 의한 평가부문별 인정점수의 합계 (단, 각 평가부문별 최대 인정점수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최저점수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9.3.1>

- 가. 조교수 승진의 경우 : 300점 이상 득점
- 나. 부교수 승진의 경우 : 500점 이상 득점<개정 2012.2.13>
- 다. 교수 승진의 경우 : 750점 이상 득점<개정 2012.2.13>

② 총장은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제1항 제3호의 인정점수에 추가하여 대학발전 부문의 실적으로 50점 이내의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교수로 승진하고자 하는 교원이 정년보장을 원하는 경우는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단, 2002년 1월 1일 이전에 임용된 교원으로서 교수로 승진하고자 하는 교원은 반드시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제28조(실적인정점수의 누적인정) ① 교수업적평가의 등위백분율 실적과 [별표29] 승진임용을 위한 실적 세부기준의 “교육/연수 1.강의평가 설문조사 점수에 따른 실적”은 현 직급 재직기간 중의 실적 가운데 교원인사규정 제28조 규정이 정하는 최저 승진소요연수 기간만큼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단, 교원인사규정 제7조, 동 규정 제33조, 동 규정 제35조의 사유로 인하여 교수업적평가 실적이나 강의평가 설문조사 점수 실적이 없는 경우는 최저 승진소요연수 기간에서 제외한다.<개정 2012.2.13>

② [별표29]의 평가사항에서 “교육/연수 1.강의평가 설문조사 점수에 따른 실적”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사항은 현 직급 재직기간 중 교원인사규정 제28조 규정이 정하는 최저 승진 소요연수에 해당하는 실적을 인정점수로 정한다. 단, 최저 승진 소요연수에 최대 2년을 더할 수 있으며, 승진임용신청자가 선택한 학년도의 실적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2.2.13>

제29조(제출서류) 교원 승진임용신청자는 현 직급 재직기간 중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3.1>

1. 교원 승진임용 신청서[별표28]
2. 제1호의 평가에 필요한 실적물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30조(학부(과) 인사위원회 평가) ① 교원의 승진임용 평가를 위하여 학부(과) 인사위원회

의 위원은 [별표31]교원 승진임용에 대한 학부(과) 인사위원회 위원 평가표를 무기명으로 작성하여 위원별로 교학처에 제출한다.

② 교학처는 위원별 평가서류를 수합하여 학부(과)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한다.

③ 학부(과) 인사위원장은 위원의 과반수가 임용신청자의 승진임용에 반대할 경우 반드시 위원회를 소집하여 찬성/반대에 대한 학부(과)의 의견을 정해야 하며 [별표32] 교원 승진임용에 대한 학부(과) 종합평가표를 작성하여 교학처에 제출한다.

제30조의1(교원인사위원회 평가) 교원의 승진임용 평가를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위원은 [별표33]교원 승진임용에 대한 교원인사위원회 평가표를 작성하여 교학처에 제출한다.<신설 2009.3.1>

제31조(준용) 본 규칙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법인동양학원 정관과 본 대학 교원인사규정 등의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임용한 교원은 이 규칙에 의해 임용한 것으로 본다.

② 제26조의 교수업적평가점수의 등위백분율은 2006학년도 교수업적평가 결과부터 적용한다.

③ 2008학년도 부교수 승진임용 신청자는 실적평가 인정점수의 합이 공업계 450점, 비공업계 400점 이상이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임용자격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임용된 산업체경력교원, 실습교원, 강의교원은 제22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재임용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임용된 실습교원 및 강의교원은 제23조제1항제1호의 교수업적평가 평정점수를 강의평가 설문조사에 의한 점수로 대체하여 적용한다.

② 제2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임용된 신규임용을 제외한 일반교원, 실습교원, 강의교원의 재임용 평가점수는 65점 이상이어야 한다.

제4조(승진임용시 교수업적평가 평정점수에 대한 경과조치) 산업체경력교원 및 실습교원은 2008학년도까지 제26조제2항, 제28조제1항의 교수업적평가 평정점수를 강의평가 설문조사

에 의한 점수로 대체하여 적용한다.

제5조(승진임용자격에 대한 경과조치) 제2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2009년 3월 1일 이전의 교수업적평가 제도에 의해 시행된 교수업적평가 결과의 평정점수 등위백분율은 취득 등위백분율에서 25%P를 뺀 값으로 계산한다.

제6조(승진임용 기준에 대한 유예조치) 제27조제1항제3호의 “각 평가부문별 최대 인정점수”는 2010학년도 승진임용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임용자격에 대한 경과조치) 제22조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임용된 실습교원 및 강의교원의 재임용 자격은 당해직급에서 15일 이상 전공과 관련이 있는 산업체에서 연수한 실적으로 한다.

제3조(재임용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제23조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임용된 실습교원 및 강의교원의 재임용 평가점수는 현 임용기간 중의 실적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100점 만점으로 한다. 단, 학장은 10점 이내의 가점을 줄 수 있다.

1. 교수업적평가 평정점수를 매 학년도별로 5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평균한 점수 : 50점. 단, 이 경우에는 교수업적평가 평정점수 배점기준의 개인평가 부분만 적용한다.
2. 학부(과) 인사위원회의 학부(과) 평가점수 : 30점
3. 교원인사위원회의 학교 평가점수 : 20점

② 재임용하는 교원은 제1항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실적물 인정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 및 제7조의 산학협력실적물은 2012년 3월 1일부터 인정 및 적용한다.

제3조(연구실적물 등의 인정환산율에 대한 경과조치) 제7조 제1항에 불구하고 2011학년도까지의 연구실적물의 인정환산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인 연구실적물 : 100%
2. 2인 공동 연구실적물 : 70%
3. 3인 공동 연구실적물 : 50%
4. 4인 이상 공동 연구실적물 : 30%

제4조(재임용 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2011학년도 교수업적평가까지는 매 학년도별로 5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평균한 점수를 적용하고 교수업적평가의 개인평가 부분만 적용한다.

제5조(승진임용 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불구하고 2012학년도 승진임용까지의 실적평가 세부 기준에 의한 평가부문별 인정점수의 합계(단, 각 평가부문별 최대 인정점수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최저점수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교수 승진의 경우 : 공업계 500점 이상, 비공업계 450점 이상 득점
2. 교수 승진의 경우 : 공업계 750점 이상, 비공업계 650점 이상 득점

제6조(실적인정점수의 누적인정에 대한 경과조치) 제28조 제2항에 불구하고 [별표29]의 평가사항에서 “교육/연수 1.강의평가 설문조사 점수에 따른 실적”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사항은 현 직급 재직기간 중의 모든 실적을 누적하여 인정점수로 정하고 2013학년도 승진임용까지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개정 2008.11.1, 2011.1.1, 2011.7.8>

교원 신규임용 절차

순번	절 차	내 용	담당부서	비 고
1	채용계획 수립	신규로 임용할 교원의 인원수와 채용분야를 계획한다.	교학처	
2	채용분야 및 지원자격 심의	학부(과)의 채용분야 및 지원자격을 심의한다.	교원인사위원회	
3	채용계획 확정	신규로 임용할 교원의 인원수와 채용분야를 확정한다.	총장	
4	채용광고	일간신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채용공고를 하고 인터넷 접수 및 서류 접수를 한다.	교학처	
5	지원자격 심사	본 대학 소속 채용심사위원 2인 이상이 심사한다[별표6].	채용심사위원	
6	서류심사 (대학공통기준)	신규임용 심사기준 중 대학공통기준의 항목별 평가기준에 따라 본 대학 소속 채용심사위원이 대학공통기준에 대한 서류심사를 한다 [별표7].	교학처 채용심사위원	
7	서류심사 (학부(과)기준)	위원 구성	채용심사위원회는 채용분야의 학부(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3인 이상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되 심사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본 대학 소속이 아닌 자로 한다.	총장
		전공 일치도	제14조가 규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채용심사위원회 위원이 심사한다[별표8]. * 전공일치도 심사에서 심사위원 전원이 C 이하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채용심사에서 탈락한다.	채용심사위원회
		전공 우수성		
		잠재 역량		
8	면접심사 대상자통보	서류심사 통과자로 선정된 채용인원의 5배수 이내를 면접심사 대상자로 통보한다.	교학처	
9	면접심사	위원 구성	면접심사위원회는 채용분야의 학부(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6인 이상의 본 대학 소속 심사위원으로 구성되 심사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채용분야 학부(과) 소속이 아닌 자로 하며 강의교원의 경우는 총장이 위촉하는 4인 이상의 채용분야 학부 소속 위원으로 구성한다.	교학처
		공통 및 전공	[별표10]신규임용 면접심사위원 심사표의 기준에 따라 면접심사위원회 위원이 심사한다. 면접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별표13]면접심사위원장 심사의견서를 작성한다. * 면접심사에서 심사위원 전원이 C 이하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채용심사에서 탈락한다.	면접심사위원회 교학처
10	총장 면접 대상자통보	면접심사 통과자로 선정된 채용인원 3배수 이내의 지원자를 총장 면접 대상자로 통보한다.	교학처	
11	총장 면접	총장은 신규임용 제청 후보자를 선정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별표14].	총장	
12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신규임용 제청 후보자에 대한 학력 및 경력사항, 연구실적물 등의 심사자료와 신규임용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참작하여 무기명 표결에 의하여 신규임용 동의 여부를 의결한다.	교원인사위원회	
13	임용제청	총장은 이사장에게 신규임용을 제청한다.	총장	
14	이사회 심의		법인	

[별표2]

교원의 자격 기준

(근거 :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0154호)

(단위 : 년)

연구교육 직 명	학 력	대학졸업자·동등자격자			전문대학졸업자·동등자격자		
	경력연수	연구실적 연 수	교육경력 연 수	계	연구실적 연 수	교육경력 연 수	계
교 수		4	6	10	5	8	13
부 교 수		3	4	7	4	6	10
조 교 수		2	2	4	3	4	7
전임강사		2	1	3	2	3	5

비 고 : 연구실적 연수와 교육경력 연수는 서로 대치할 수 있다.

[별표3] <개정 2008.11.1, 2009.3.1, 2011.7.8>

일반교원 신규임용 심사기준

구분	항목	평가배점	평가기준	비고		
서류 심사 (80점)	학교 성적	학부 성적 5점	$\frac{\text{전학년 평점평균}}{\text{최대평점}}$			
		대학원 성적 5점	$\frac{\text{전학년 평점평균}}{\text{최대평점}}$	*박사 학위 취득자는 석사 과정과 박사과정의 성적 중 우수한 것으로 함.		
	학교 공통 기준 (50점)	연구개발 실적	20점	-SCI급 학술지 게재 논문 5점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및 동급 이상의 국외학술지 게재 논문 3점	*논문은 책임저자(교신저자 및 제1저자)는 100% 인정, 그 외에는 인정 환산율에 의하며 최근 4년간 연구실적만 인정함	
		산업체 근무 경력	15점	-채용분야 관련 산업체근무경력 2점/근무 연수(최대 10점) -산업체 경력 우수성(최대 5점)	*정부출연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 포함 *산업체 경력 우수성은 산업체의 위상, 직급 등을 고려	
		교육 경력	5점	-대학 전임교원 1점/학기 -대학 비전임교원 0.5점/학기	*전문대학과 동등 학교 수준 이상의 교육경력만 인정함	
	학부 기준 (30점)	전공 일치도	10점	*A, B, C, D, E 5단계로 평가함	*전공일치도에서 심사위원 전원이 C이하 평가 시 탈락함	
		전공 우수성	10점	*A, B, C, D, E 5단계로 평가함		
		잠재역량	10점	*A, B, C, D, E 5단계로 평가함		
	면접 심사 (20점)	면접 심사 위원 (20점)	공통	14점	*A, B, C, D, E 5단계로 평가함 *심사기준 관련하여 제14조 참조	*면접심사에서 심사위원 전원이 C이하 평가 시 탈락함
			전공	6점	*A, B, C, D, E 5단계로 평가함	
계		100점				

※ 세부 항목별 점수는 평가배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 A, B, C, D, E 5단계 평가는 각 항목 평가배점의 100%, 80%, 60%, 40%, 20%로 한다.

※ 연구 및 산업체 경력 등의 관련 실적은 채용분야와 유관한 경우에 인정한다.

※ 대학 전임교원 교육경력과 산업체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 교육경력만 인정한다.

[별표3-1] <신설 2008.11.1, 개정 2011.7.8>

강의교원 신규임용 심사기준

구분	항목	평가배점	평가기준	비고		
서류 심사 (70점)	학교 성적	학부성적 5점	<u>전학년평점평균</u> 최대평점			
		대학원성적 5점	<u>전학년평점평균</u> 최대평점	*박사 학위 취득자는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성적중 우수한 것으로 함.		
	학교 공통 기준 (40점)	연구개발 실적	10점	-SCI급 학술지 게재 논문 5점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및 동급 이상의 국외학술지 게재 논문 3점	*논문은 책임저자(교신저자 및 제1저자)는 100% 인정, 그 외에는 인정 환산율에 의하며 최근 4년간 연구실적만 인정함	
		산업체 근무 경력	10점	-채용분야 관련 산업체근무경력 1점/근무 연수(최대 5점) -산업체 경력 우수성(최대 5점)	*정부출연연구소 및 대학부설 연구소 포함 *산업체 경력 우수성은 산업체의 위상, 직급 등을 고려	
		교육 경력	10점	-대학 전임교원 1점/학기 -대학 비전임교원 0.5점/학기	*전문대학과 동등 학교 수준 이상의 교육경력만 인정함	
	학부 기준 (30점)	전공일치도	10점	*A, B, C, D, E 5단계로 평가함		
		전공우수성	10점	*A, B, C, D, E 5단계로 평가함	*전공일치도에서 심사위원 전원이 C이하 평가 시 탈락함	
		잠재역량	10점	*A, B, C, D, E 5단계로 평가함		
	면접 심사 (30점)	면접 심사 위원 (30점)	공통	21점	*A, B, C, D, E 5단계로 평가함 *심사기준 관련하여 제14조 참조	*면접심사에서 심사위원 전원이 C이하 평가 시 탈락함
			전공	9점	*A, B, C, D, E 5단계로 평가함	
계		100점				

※ 세부 항목별 점수는 평가배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 A, B, C, D, E 5단계 평가는 각 항목 평가배점의 100%, 80%, 60%, 40%, 20%로 한다.

※ 연구 및 산업체 경력 등의 관련 실적은 채용분야와 유관한 경우에 인정한다.

※ 대학 전임교원 교육경력과 산업체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 교육경력만 인정한다.

[별표4] <개정 2008.11.1, 2011.7.8, 2012.2.13>

산학협력중점교원 및 산업체경력교원 신규임용 심사기준

구분	항목	평가배점	평가기준	비고
서류 심사 (70점)	학교 공통 기준 (45점)	산업체 근무 경력	20점 -근무 연수 × 1점	*채용분야 유관 경력만 인정함 *학위과정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석사과정 최대 2년, 박사과정 최대 3년을 제외함
		산업체 직위	20점 -대기업 대표이사급 이상 20점 -대기업 임원/중소기업 대표이사급 이상 16점 -대기업 부장급 또는 중소기업 임원 12점 -대기업 과장급 또는 중소기업 부장급 8점 -기타 4점	*해당 사항이 복수일 경우 유리한 경력으로 평가함
		학위 및 자격	5점 -박사 및 기술사 5점 -석사 2점	*해당 사항이 복수일 경우 유리한 것으로 평가함
	학부 기준 (25점)	전공 일치도	10점 *A, B, C, D, E 5단계로 평가함	*전공일치도에서 심사위원 전원이 C이하 평가 시 탈락함
		전공 우수성	10점 *A, B, C, D, E 5단계로 평가함	
		잠재역량	5점 *A, B, C, D, E 5단계로 평가함	
면접 심사 (30점)	면접 심사 위원 (30점)	공통	21점 *A, B, C, D, E 5단계로 평가함 *심사기준 관련하여 제14조 참조	*면접심사에서 심사위원 전원이 C이하 평가 시 탈락함
		전공	9점 *A, B, C, D, E 5단계로 평가함	
계		100점		

※ 세부 항목별 점수는 평가배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 A, B, C, D, E 5단계 평가는 각 항목 평가배점의 100%, 80%, 60%, 40%, 20%로 한다.

※ 연구 및 산업체 경력 등의 관련 실적은 채용분야와 유관한 경우에 인정한다.

[별표5] <개정 2008.11.1, 2011.7.8>

실습교원 신규임용 심사기준

구 분	항 목	평가배점	평 가 기 준	비 고	
서류 심사 (60점)	학교 공통 기준 (15점)	학부성적 4점	$\frac{\text{전학년 평점평균}}{\text{최대평점}}$		
		대학원성적 4점	$\frac{\text{전학년 평점평균}}{\text{최대평점}}$	*박사 학위 취득자는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성적 중 우수한 것으로 함	
		연구실적 및 교육경력 7점	-지원자격 초과 연구실적 연수 및 교육 경력 연수 × 1점	*고등교육법 제16조의 교원자격 기준 대비 초과 연수임	
	학부 기준 (45점)	전공 일치도	10점	*A, B, C, D, E 5단계로 평가함	*전공일치도에서 심사위원 전원이 C이하 평가 시 탈락함
		전공 우수성	20점	*A, B, C, D, E 5단계로 평가함	
		잠재역량	15점	*A, B, C, D, E 5단계로 평가함	
면접 심사 (40점)	면접 심사 위원 (40점)	공통	28점	*A, B, C, D, E 5단계로 평가함 *심사기준 관련하여 제14조 참조	*면접심사에서 심사위원 전원이 C이하 평가 시 탈락함
		전공	12점	*A, B, C, D, E 5단계로 평가함	
계		100점			

※ 세부 항목별 점수는 평가배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 A, B, C, D, E 5단계 평가는 각 항목 평가배점의 100%, 80%, 60%, 40%, 20%로 한다.

※ 연구 및 산업체 경력 등의 관련 실적은 채용분야와 유관한 경우에 인정한다.

[별표6] <개정 2009.3.1>

신규임용 지원자격 심사표

교원구분	채용분야	지원자격
공 통 지 원 자 격	- 고등교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자격기준 및 자격인정 해당자 - 사립학교 교수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 외국인의 경우 E-1 비자 소지자	
	교원인사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어야하며[별표2] 교원인사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로 한다. 단, 산업체경력교원은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로서 산업체 경력이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접수번호	지원자 성명	합격/불합격	비고(불합격 사유)
		(1) 합격 (2) 불합격	
		(1) 합격 (2) 불합격	
		(1) 합격 (2) 불합격	
		(1) 합격 (2) 불합격	
		(1) 합격 (2) 불합격	
		(1) 합격 (2) 불합격	
		(1) 합격 (2) 불합격	
		(1) 합격 (2) 불합격	
		(1) 합격 (2) 불합격	
		(1) 합격 (2) 불합격	
		(1) 합격 (2) 불합격	
		(1) 합격 (2) 불합격	

평가자 : 소속 _____ 성명 _____ (인)
 확인자 : 소속 _____ 성명 _____ (인)

[별표7]

신규임용 학교공통기준 심사표

학부(과)	교원구분	채용분야

서류 심사	구분	학교공통기준					합계	순위
	항목							
접수 번호	평가배점 성명							

※ 학교공통기준 항목 및 평가배점은 제14조의 심사기준에 의한다.

평가자 : 소속 _____ 성명 _____ (인)

[별표8]

신규임용 학부(과)기준(전공일치도/전공우수성/잠재역량) 심사표

학부(과)	교원구분	채용분야

접수 번호	성명	평가 항목	평가 배점	평가내용	평가점수
		전공 일치도			
		전공 우수성			
		잠재 역량			

※ 평가배점 및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제14조의 심사기준에 의한다.

평가자 : 소속 _____ 성명 _____ (인)

[별표8-1] <신설 2011.7.8>

신규임용 학부(과) 서류심사 평가기준표(예시)

(일반교원 · 강의교원 / 공학 · 사회실무 계열)

학부(과)	교원구분	채용분야

평가 항목 및 배점	평가 기준	평정점수			비고
		학과평가	가중치	점수	
전공일치도 (10점)	• 산업체업무		0.4		분야별 일치도 학과평가 점수범위 :0점~10점
	• 박사학위논문		0.3		
	• 석사학위논문		0.2		
	• 학부전공		0.1		
	소계/등급			/	
	[등급 산정 기준] A:8이상 10이하, B:6이상 8미만, C:4이상 6미만, D:2이상 4미만, E:2미만				
전공우수성 (10점)	• 해당분야 자격증(기술사급 이상)		5.0		전공우수성 최대 인정점수 :10점
	• SCI급 논문실적, 제1저자		5.0		
	•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논문실적, 제1저자		3.0		
	• SCI급 논문실적, 공동저자		1.0		
	•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논문실적, 공동저자		0.5		
	소계				
잠재역량 (10점)	• 산학협력		0.4		분야별 잠재역량 학과평가 점수범위 :0점~10점
	• 연구		0.3		
	• 교육(강의경력)		0.3		
	소계				
합 계					
기타사항					

- ※ 평가기준 및 평정점수 란의 가중치는 학부(과)에서 조정 가능함
- ※ 모든 실적은 최근 4년 이내의 것만 인정함
- ※ 전공우수성은 채용분야 관련 실적만 인정하며, 논문 실적 점수는 저자 수에 따라 1인 100%, 2인 70%, 3인 50%, 4인 이상 30%로 함
- ※ 평가기준 내에서 세부항목별 배점은 평가배점을 초과할 수 없음

확인자 : 소속 _____ 성명 _____ (인)

[별표8-2] <신설 2011.7.8>

신규임용 학부(과) 서류심사 평가기준표(예시)

(일반교원 · 강의교원 / 예체능 계열)

학부(과)	교원구분	채용분야

평가 항목 및 배점	평가 기준	평정점수			비고
		학과평가	가중치	점수	
전공일치도 (10점)	• 산업체업무		0.4		분야별 일치도 학과평가 점수범위 :0점~10점
	• 박사학위논문		0.2		
	• 석사학위논문		0.2		
	• 학부전공		0.2		
	소계/등급			/	
		[등급 산정 기준] A:8이상 10이하, B:6이상 8미만, C:4이상 6미만, D:2이상 4미만, E:2미만			
전공우수성 (10점)	• 산업체경력 우수성 (0점~10점)		0.5		실무경력일치도, 교육경력, 포트폴리오, 연구논문, 작품지도능력, 사회적지명도
	• 교육경력 우수성 (0점~10점)		0.3		
	•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논문실적, 제1저자		1.0		
	•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논문실적, 공동저자		0.5		
	소계				
잠재역량 (10점)	• 산학협력(산학협동 및 취업활성화)		0.3		분야별 잠재역량 학과평가 점수범위 :0점~10점
	• 연구(포트폴리오)		0.3		
	• 교육		0.2		
	• 국제교류(해외학위/해외학술발표)		0.2		
	소계				
합 계					
기타사항					

- ※ 평가기준 및 평정점수 란의 가중치는 학부(과)에서 조정 가능함
- ※ 모든 실적은 최근 4년 이내의 것만 인정함
- ※ 전공우수성은 채용분야 관련 실적만 인정하며, 논문 실적 점수는 저자 수에 따라 1인 100%, 2인 70%, 3인 50%, 4인 이상 30%로 함
- ※ 평가기준 내에서 세부항목별 배점은 평가배점을 초과할 수 없음

확인자 : 소속 _____ 성명 _____ (인)

[별표8-3] <신설 2011.7.8, 2012.2.13>

신규임용 학부(과) 서류심사 평가기준표(예시)

(산학협력중점교원 및 산업체경력교원)

학부(과)	교원구분	채용분야

평가 항목 및 배점	평가 기준	기준점수	점수 및 등급	비고	
전공일치도 (10점)	학부전공	채용분야 관련 학과	5	/	
		채용분야 유사 학과	3		
	산업체업무	채용분야 업무 경력 15년 이상	5		
		산업체 경력 15년 이상	3		
	석·박사학위 논문	채용분야 관련 학위 논문	2		
		기타 분야 학위 논문	0		
전공우수성 (10점)	채용분야의 실무경력 일치도, 산업체 경력의 우수성, 교육경력, 연구경력, 수상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A)매우 우수	10		
		(B)우수	8		
		(C)보통	6		
		(D)미흡	4		
		(E)매우 미흡	2		
잠재역량 (5점)	산학협동능력, 실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과발전 기여역량 평가	(A)매우 우수	5		
		(B)우수	4		
		(C)보통	3		
		(D)미흡	2		
		(E)매우 미흡	1		
합 계					
기타사항					

※ 평가기준 내에서 세부항목별 배점은 평가배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전공일치도 등급은 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정함
 A : 8이상 / B : 6이상 8미만 / C : 4이상 6미만 / D : 2이상 4미만 / E : 2미만

확인자 : 소속 _____ 성명 _____ (인)

[별표9]

신규임용 채용심사위원회 심사 집계표

학부(과)	교원구분	채용분야

서류 심사	구분	자격기준 심사	학교 공통기준	학부기준			합계	순위
	항목		[별표7]	전공 일치도	전공 우수성	잠재역량		
접수 번호	평가배점 성명	합격/불합격						

※ 평가배점은 제14조의 심사기준에 의한다.

확인자 : 소속 _____ 성명 _____ (인)

[별표10] <개정 2008.11.1, 2011.7.8.>

신규임용 면접심사위원 심사표

학부(과)	교원구분	채용분야	접수번호	지원자 성명

구분	항 목	등급	점수	비고
공통	1. 목소리의 크기나 억양은 알아듣기 쉬웠다.		/10	
	2. 복장, 기타 행동은 교원으로서의 품위가 있었다.		/10	
	3. 질문에 적절한 답을 하였다.		/10	
	4. 준비한 자료는 발표주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10	
	5. 학생지도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있었다.		/10	
	6. 훌륭한 교원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이 있었다.		/10	
	7. 주제를 외국어로 발표하였다.		/10	
	소 계		/70	
전공	8. 요구한 강의교과목에 대한 강의 능력이 있었다.		/10	
	9. 전공분야 및 모집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었다.		/10	
	10. 지원자를 해당학과 교원으로 채용하고 싶었다.		/10	
	소 계		/30	
합 계			/100	

기타의견	
------	--

- ※ 평가배점은 제14조의 심사기준에 따름
- ※ 평가는 주관적으로 서술하고 평정은 A(매우 그렇다), B(그렇다), C(보통이다), D(그렇지 않다), E(매우 그렇지 않다) 5단계로 평정함
- ※ 해당 학부(과) 심사위원은 구분 전체(공통 및 전공)를, 타학부(과) 심사위원은 구분 중 ‘공통’만 평가함
-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심사위원 전원이 C 이하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면접심사에서 탈락함

평가자 : 소속 _____ 성명 _____ (인)

[별표10-1] <신설 2011.7.8.>

신규임용 학부(과) 면접심사 계획서(예시)

학부(과)	교원구분	채용분야

면접심사 방법	<input type="checkbox"/> 공개강의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공개세미나 <input type="checkbox"/> 면담 <input type="checkbox"/> 공개실습
면접심사 소요시간	1인당 40분
면접심사 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분야와 관련한 연구 수행 내용 및 향후 교육 계획 • 채용분야와 관련한 업적 및 향후 교육 계획
면접심사 장소	
면접대상자 대기 장소	
면접 대상자 사전 통보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비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 자료 출력본 6부 • 발표 자료 포함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력 및 경력 - 연구 실적 (논문, 저서, 특허, 수상 등) - 실무 수행 내용 - 향후 교육 계획 • 면접 심사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 발표 : 15분 - 질의응답 : 25분
특이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접심사장 세부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빔프로젝트 사용여부 : 필수사용 / 발표자 선택 허용 / 사용하지 않음 ※빔프로젝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아래의 내용은 생략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 운영체제 : 윈도우XP / 윈도우Vista / 윈도우7 / 기타() - 권장 File형식 : PPT(2007) / PPT(2003) / 기타() - 발표자의 개인노트북 사용 허용여부 : Y / N

※ 면접심사 방법 및 소요시간은 학부(과)에서 조정 가능함
 ※ 일반교원의 면접심사 방법은 공개강의 또는 공개세미나를 원칙으로 함

확인자 : 소속 _____ 성명 _____ (인)

[별표12] <개정 2011.7.8.>

신규임용 심사 집계표

학부(과)	교원구분	채용분야

서류 면접 심사	구분	채용심사위원회				면접심사위원회		합계	순위	비고
	항목	대학공 통기준	전공 일치도	전공 우수성	잠재 역량	공통	전공			
접수번호	평가배점							100		
성명										

※ 평가배점은 제14조의 심사기준에 의한다.

확인자 : 소속 _____ 성명 _____ (인)

[별표13]

면접심사위원장 심사의견서

학부(과)	교원구분	채용분야

접수번호	지원자 성명	심사 의견	비고

종합 의견

※ 면접심사위원장 심사의견서는 총장 면접심사를 위한 참고자료이며 평가점수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면접심사위원회 위원장 : 소속 _____ 성명 _____ (인)

[별표14]

신규임용 제청 후보자 선정표

학부(과)	교원구분	채용분야

접수번호	지원자 성명	선정 결과	비고
		<input type="checkbox"/> 합격 <input type="checkbox"/> 불합격	
		<input type="checkbox"/> 합격 <input type="checkbox"/> 불합격	
		<input type="checkbox"/> 합격 <input type="checkbox"/> 불합격	

총 장 _____ (인)

[별표15] <개정 2009.3.1, 2012.2.13>

교원 재임용 절차

순번	절 차	내 용	담당부서	비 고
1	재임용 신청	재임용대상자는 [별표16]교원 재임용 신청서, [별표17] 교원 재임용 업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임용기간 만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교학처에 제출한다.	교 학 처	
2	학부(과) 인사위원회 구성	학부(과) 인사위원회는 학부(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교 학 처	재임용 예정일 4월 전까지 위촉
3	학부(과) 평가	학부(과) 인사위원은 재임용에 대한 학부(과) 평가표를 무기명으로 작성하여 교학처에 제출한다. 일반교원, 산학협력중점교원 및 산업체경력교원, 실습교원, 강의 교원의 평가표는 각각 [별표18], [별표19], [별표20], [별표21]을 사용한다.	교학처, 학부(과) 인사위원회	
4	학교 평가	교원인사위원회 인사위원은 교원 재임용에 대한 교원 인사위원회 평가표를 무기명으로 작성하여 교학처에 제출한다. 일반교원, 산학협력중점교원 및 산업체경력 교원, 실습교원, 강의교원의 평가표는 각각 [별표22], [별표23], [별표24], [별표25]를 사용한다.	교원인사위원회	
5	교원인사위원회 소집	총장은 재임용 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최종 승인한 후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다.	총장	
6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재임용 신청자에 대한 평가 자료와 대학에서의 제반 활동 등을 참작하여 무기명 표결에 의하여 재임용 동의 여부를 의결한다.	교원인사위원회	
7	이의신청 및 조정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재임용 신청자가 임용기준에 미달된 경우,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교학처 교원인사위원회	
8	재임용 제청	총장의 결재를 받아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재임용을 학교법인에 제청한다.	교학처	
9	재임용 여부 통보	재임용 신청자에게 재임용 여부를 통지한다.	학교법인	임용기간 만료 2월전까지 통보

[별표17] <개정 2009.3.1, 2012.2.13>

교원 재임용 업적 보고서

작성일자 :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동양미래대학

1. 교육 분야

재임용 기간 중의 강의평가 결과	
()학년도 1/2학기(/),	()학년도 1/2학기(/)
()학년도 1/2학기(/),	()학년도 1/2학기(/)
()학년도 1/2학기(/),	()학년도 1/2학기(/)

강의 업무	서술 내용

※ 강의 준비, 강의 수행, 강의 결과 등 실적의 우수성에 대해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학생 지도 업무	서술 내용

※ 학교생활, 동아리, 작품 활동 등 학생지도에 관련된 실적의 우수성에 대해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연구 분야

서술 내용

※ 논문의 질적 우수성, 연구 활동의 우수성, 논문상 수상 등 연구 실적의 우수성에 대해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종류	제 목	논문지명(출판사명), 발행 연도, 호, 권수, 쪽, 연수기관명, 연수기간	본인포함 저자 수	비고
논문				
저서				
특허				
연구보고서				
기타				

※ 논문의 비고란에는 SCI 등재지, 학진 등재지 등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저서의 비고란에는 교재로의 사용 여부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봉사 분야

서술 내용

※ 교내의 보직, 각종 위원회 활동, 실습장 관리, 기타 봉사활동 등 교내외에서 활동하신 실적의 우수성에 대해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4. 산학협력 분야

종류	제목	실적
산학협력 교육활동		
산학협력 연구활동		
산학협력 봉사활동		

※ 취업/현장실습, 캡스톤 디자인, 기술이전, 특허등록, 산업체연구비 수혜, 외부자금유치, 기술·경영자문 등 실적의 우수성에 대해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5. 기 타

서술 내용

※ 학부(과)교직원과의 인화관계, 수상실적, 학과 업무 기여도, 기타 학과 및 학교 발전을 위한 활동 등 총장 가점에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교원 재임용 업적 보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 ※ 산학협력중점교원 및 산업체경력교원은 2. 연구 분야에 교재 및 교보재 개발 실적을 위주로 작성하시고, 3. 산학협력 분야에 취업 및 산학협력 관련 실적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실습교원은 1. 교육 분야에 실습장 관리 관련 실적을 기재하시고 2. 연구 분야에 교재 및 교보재 개발 실적을 위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강의교원은 2. 연구 분야에 교재 및 교보재 개발 실적을 위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1. 교육 분야의 학생지도 업무, 3. 봉사 분야 및 4. 산학협력 분야는 평가 대상항목이 아닙니다)

교원 재임용 업적 보고서 작성 지침

1. 교수님의 재임용에 관한 평가에는 매년 작성하시는 “교수업적평가“ 결과, “학부(과)평가“ 및 “학교평가(인사위원회평가)“로 구성됩니다.
2. 제출하시는 이 자료는 교수님에 대한 학부(과) 및 학교 평가에 모두 사용됩니다.
3. 반드시 재임용 소요 연한에 해당되는 업적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4. 서술 내용에는 그 동안 교수님께서 취득하신 “교수업적평가“ 점수나 해당 사항을 기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수님께서 “교수업적평가“시 점수화하기 곤란했거나, 기타의 이유로 다른 교수님에 비해서 월등한 업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하지 못한 내용이 있는 경우 상세히 기재하시어 “교수업적평가“로만 평가되는 불합리한 점을 조금이라도 보충하시라는 의도입니다. 내용을 최대한 상세히 작성하시면 학과 및 인사위원 평가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업적 내용 중 다른 교수님과 비교해서 특별히 다른 것이 없다면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5. 학부(과) 및 학교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안을 기재하셨을 경우에는 반드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의문 사항은 교학처에 문의하십시오.

[별표18] <개정 2012.2.13>

일반교원 재임용에 대한 학부(과) 평가표

작성일자 : 년 월 일

심사대상교수 소속 : _____부(과) 성명 : _____

1. 교육 분야

	평가 내용	평정등급
강의 업무		

※ 강의 준비, 강의 수행, 강의 결과 등 실적의 우수성에 대해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내용	평정등급
학생 지도 업무		

※ 학교생활, 동아리, 작품 활동 등 학생지도에 관련된 실적의 우수성에 대해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2. 연구 분야

	평가 내용	평정등급

※ 논문의 질적 우수성, 연구 활동의 우수성, 논문상 수상 등 연구 실적의 우수성에 대해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3. 봉사 분야

평가 내용	평정등급

※ 교내의 보직, 각종 위원회 활동, 실습장 관리, 기타 봉사활동 등 교내외에서 활동하신 실적의 우수성에 대해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4. 산학협력 분야

평가 내용	평정등급

※ 취업/현장실습, 캡스톤 디자인, 기술이전, 특허등록, 산업체연구비 수혜, 외부자금유치, 기술·경영자문 등 산학협력 활동을 하신 실적의 우수성에 대해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4. 종 합

분 야		배점	평정점수	점수 (배점x평정점수)
교육 분야	강의 업무	40		
	학생지도 업무	10		
연구 분야		20		
봉사 분야		10		
산학협력 분야		20		
합 계		100	 	

기 타 의 견	
---------	--

※ 기타의견란에는 학부(과)교직원과의 인화관계, 수상실적, 학과 업무 기여도, 기타 학과 및 학교 발전을 위한 활동 등 총장 가점에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교원 재임용에 대한 학부(과) 평가지침

1. 학부(과) 평가는 재임용 평가점수 전체에서 30[%]의 비율로 평가 됩니다.
2. 평정등급은 A, B, C, D 및 E의 5단계이고 해당 항목마다 평정등급을 기재해야 합니다.
3. 평정등급은 “C” 등급을 기준으로 하시되 “C” 등급이외의 평정등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4. 평정등급 및 평정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평정등급 : A(매우우수), B(우수), C(보통), D(부족), E(매우부족)
 - 평정점수 : A(1.0), B(0.8), C(0.6), D(0.4), E(0.2)

[별표20] <신설 2009.3.1, 개정 2011.3.1>

실습교원 재임용에 대한 학부(과) 평가표

작성일자 : 년 월 일

심사대상교수 소속 : _____ 부(과) 성명 : _____

분 야	평 가 내 용	배점	평정 등급	평정 점수	평가내용
기본적 자질	교육자로서의 인격과 품위 및 학부(과)교수와의 융화관계, 학부(과) 행사 참여	10점			
강의충실도	강의에 대한 열의, 휴보강 유무	10점			
강의(실습) 능력	학습방법개발, 교수법개발, 학생과의 교감 실습교육 프로그램/과정 개발 실습교재 및 학습보조자료 개발	10점			
학생지도	개인 및 집단지도, 학생면담 및 학술 활동 지원	10점			
학생취업	본인 활동에 의한 학생 취업 (외부 의뢰 및 학부(과), 대학 수신에 의한 실적 제외)	20점			
실습관리	[별표 20-1] 실습교원에 대한 학부(과) 실습관리 평가표에 의거함	40점			
합 계		100점	X		
기타의견					

※ 기타 의견란에는 학부(과)교직원과의 인화관계, 수상실적, 학부(과)에서의 협조상황 및 총장 가점에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지침

1. 학부(과)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을 취득해야 재임용자격이 됩니다.
2. 평정등급은 A, B, C, D 및 E의 5단계이고 해당 항목마다 평정등급을 기재해야 합니다.
 - 평정등급 : A(매우우수), B(우수), C(보통), D(부족), E(매우부족)
 - 평정점수 : A(1.0), B(0.8), C(0.6), D(0.4), E(0.2)
3. 평정등급은 "C" 등급을 기준으로 하시되 "C" 등급이외의 평정등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표20-1] <신설 2011.3.1>

실습교원에 대한 학부(과) 실습관리 평가표

작성일자 : 년 월 일

심사대상교수 소속 : _____부(과) 성명 : _____

분 야	평 가 내 용	배점	평정 등급	평정 점수	평가내용
매뉴얼관리	기자재 매뉴얼 관리	10점			
실험실습 기자재 관리	기자재 현황 관리	10점			
	실험실습기기의 성능 및 상태 유지	20점			
실험실습 재료 관리	실습재료 수불부 관리	10점			
	실습재료 관리 상태	20점			
실험실습장 관리	실험실습 일지 관리	10점			
	실험실습장 관리 상태	20점			
합 계		100점	X		
기타의견					

※ 기타 의견란에는 실습과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지침

1. 실습교원에 대한 학부(과) 실습관리 평가표에 의하여 매학기 평가하여 재임용 직전학기까지 합산하여 평균한 점수가 재임용 자격심사에 반영됩니다.
2. 평정등급은 A, B, C, D 및 E의 5단계이고 해당 항목마다 평정등급을 기재해야 합니다.
 - 평정등급 : A(매우우수), B(우수), C(보통), D(부족), E(매우부족)
 - 평정점수 : A(1.0), B(0.8), C(0.6), D(0.4), E(0.2)
3. 평정등급은 "C" 등급을 기준으로 하시되 "C" 등급이외의 평정등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표21] <개정 2009.3.1, 2011.3.1, 2012.2.13>

강의교원 재임용에 대한 학부(과) 평가표

작성일자 : 년 월 일

심사대상교수 소속 : _____ 부(과) 성명 : _____

분 야	평 가 내 용	배점	평정 등급	평정 점수	평가내용
기본적 자질	교육자로서의 인격과 품위 및 학부(과)교수와의 융화관계	10점			
강의능력	강의에 대한 열의, 휴보강 유무	30점			
	학습방법개발, 교수법개발, 학생과의 교감	30점			
교육활동	주당 책임시수 준수	5점			
	담당과목 수	5점			
	교육 프로그램/교과목 개발	10점			
	교재 및 학습보조자료 개발	10점			
합 계		100점	X		
기타의견					

※ 기타 의견란에는 학부(과)교직원과의 인화관계, 수상실적, 학부(과)에서의 협조상황 및 총장 가점에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지침

1. 학부(과)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을 취득해야 재임용자격이 됩니다.
2. 평정등급은 A, B, C, D 및 E의 5단계이고 해당 항목마다 평정등급을 기재해야 합니다.
 - 평정등급 : A(매우우수), B(우수), C(보통), D(부족), E(매우부족)
 - 평정점수 : A(1.0), B(0.8), C(0.6), D(0.4), E(0.2)
3. 평정등급은 "C" 등급을 기준으로 하시되 "C" 등급이외의 평정등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표22] <개정 2012.2.13>

일반교원 재임용에 대한 교원인사위원회 평가표

작성일자 : 년 월 일

심사대상교수 소속 : _____부(과) 성명 : _____

1. 교육 분야

평가 내용	평점등급

2. 연구 분야

평가 내용	평점등급

3. 봉사 분야

평가 내용	평점등급

4. 산학협력 분야

평가 내용	평점등급

5. 총 합

분 야	배점	평정점수	점수 (배점x평정점수)
교육 분야	50		
연구 분야	20		
봉사 분야	10		
산학협력 분야	20		
합 계	100	 	

기 타 의 견	
---------	--

※ 기타 의견란에는 총장 가점에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교원 재임용에 대한 교원인사위원회 평가지침

1. 교원인사위원회 평가는 재임용 평가점수 전체에서 20[%]의 비율로 평가됩니다.
2. 평정등급은 A, B, C, D 및 E의 5단계이고 해당 항목마다 평정등급을 기재해야 합니다.
3. 평정등급은 “C” 등급을 기준으로 하시되 “C” 등급이외의 평정등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4. 평정등급 및 평정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평정등급 : A(매우우수), B(우수), C(보통), D(부족), E(매우부족)
 - 평정점수 : A(1.0), B(0.8), C(0.6), D(0.4), E(0.2)

[별표23] <신설 2009.3.1, 2012.2.13>

산학협력중점교원 및 산업체경력교원 재임용에 대한 교원인사위원회 평가표

작성일자 : 년 월 일

심사대상교수 소속 : _____부(과) 성명 : _____

1. 교육 분야

평가 내용	평점등급

2. 산학협력 분야

평가 내용	평점등급

3. 봉사 분야

평가 내용	평정등급

4. 총 합

분 야	배점	평정점수	점수 (배점x평정점수)
교육 분야	30		
산학협력 분야	60		
봉사 분야	10		
합 계	100	 	

기 타 의 견	
---------	--

※ 기타 의견란에는 총장 가점에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산학협력중점교원 및 산업체경력교원 재임용에 대한 교원인사위원회 평가표 작성지침

1. 교원인사위원회 평가는 재임용 평가점수 전체에서 20[%]의 비율로 평가됩니다.
2. 평정등급은 A, B, C, D 및 E의 5단계이고 해당 항목마다 평정등급을 기재해야 합니다.
3. 평정등급은 “C” 등급을 기준으로 하시되 “C” 등급이외의 평정등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4. 평정등급 및 평정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평정등급 : A(매우우수), B(우수), C(보통), D(부족), E(매우부족)
 - 평정점수 : A(1.0), B(0.8), C(0.6), D(0.4), E(0.2)

[별표24] <신설 2009.3.1, 2012.2.13>

실습교원 재임용에 대한 교원인사위원회 평가표

작성일자 : 년 월 일

심사대상교수 소속 : _____부(과) 성명 : _____

1. 교육 분야

평가 내용	평점등급

2. 산학협력 분야

평가 내용	평점등급

3. 봉사 분야

평가 내용	평정등급

4. 총 합

분 야	배점	평정점수	점수 (배점x평정점수)
교육 분야	50		
산학협력 분야	30		
봉사 분야	20		
합 계	100	X	

기 타 의 견	
---------	--

※ 기타 의견란에는 총장 가점에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실습교원 재임용에 대한 교원인사위원회 평가표 작성지침

1. 교원인사위원회 평가는 재임용 평가점수 전체에서 20[%]의 비율로 평가됩니다.
2. 평정등급은 A, B, C, D 및 E의 5단계이고 해당 항목마다 평정등급을 기재해야 합니다.
3. 평정등급은 “C” 등급을 기준으로 하시되 “C” 등급이외의 평정등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4. 평정등급 및 평정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평정등급 : A(매우우수), B(우수), C(보통), D(부족), E(매우부족)
 - 평정점수 : A(1.0), B(0.8), C(0.6), D(0.4), E(0.2)

[별표25] <개정 2009.3.1, 2012.2.13>

강의교원 재임용에 대한 교원인사위원회 평가표

작성일자 : 년 월 일

심사대상교수 소속 : _____부(과) 성명 : _____

1. 교육 분야

평가 내용	평정등급

2. 총 합

분 야	배점	평정점수	점수 (배점x평정점수)
교육 분야	100		
합 계	100	 	

기 타 의 견	
---------	--

※ 기타 의견란에는 총장 가점에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강의교원 재임용에 대한 교원인사위원회 평가표 작성지침

1. 교원인사위원회 평가는 재임용 평가점수 전체에서 20[%]의 비율로 평가됩니다.
2. 평정등급은 A, B, C, D 및 E의 5단계이고 해당 항목마다 평정등급을 기재해야 합니다.
3. 평정등급은 “C” 등급을 기준으로 하시되 “C” 등급이외의 평정등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4. 평정등급 및 평정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평정등급 : A(매우우수), B(우수), C(보통), D(부족), E(매우부족)
 - 평정점수 : A(1.0), B(0.8), C(0.6), D(0.4), E(0.2)

[별표26]

교원 재임용 종합 평가표

소속	이름	업적 평가	학부(과) 평가	인사위 평가	합계	재임용여부 (가/부) [†]

†재임용하는 교원은 평가점수가 70(80)점 이상이어야 한다.

년 월 일

확인자 : 소속

성명

(인)

[별표26-1] <신설 2012.2.13>

재임용 평가에 대한 교수업적평가 반영비율 및 등급별 점수표

교원구분		일반교원	실습교원	산학협력중점교원 / 산업체경력교원 / 강의교원
재임용 기준점수		70점	70점	80점
교수업적평가 반영비율		50%	30%	30%
교수업적평가 등급 및 등급별 점수	A등급	50.0점	30.0점	30.0점
	B등급	46.3점	27.8점	28.5점
	C등급	42.5점	25.5점	27.0점
	D등급	38.8점	23.3점	25.5점
	E등급	35.0점	21.0점	24.0점

[별표27]

교원 승진임용 절차

순번	절차	내용	담당부서	비 고
1	교원 승진임용 신청	교원 중 승진임용대상자는 [별표28]교원 승진임용신청서를 작성하고, 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학처에 제출한다.	본인 교학처	
2	학부(과) 인사위원회 구성	학부(과) 인사위원회는 학부(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교학처	승진임용예정 일 4월 전까지 위촉
3	학부(과) 평가	학부(과)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별표31]교원 승진임용에 대한 학부(과) 인사위원회 위원 평가표를 무기명으로 작성하여 위원별로 교학처에 제출한다.	교학처, 학부(과) 인사위원회	
4	학부(과) 평가 결과 전달	교학처는 위원별 평가서류를 수합하여 학부(과)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한다.	교학처	
5	학부(과) 평가 결과 처리	학부(과) 인사위원장은 위원의 과반수가 승진임용신청자의 승진임용에 반대할 경우 반드시 위원회를 소집하여 찬성/반대에 대한 학부(과)의 의견을 정해야 하며 [별표32] 교원 승진임용에 대한 학부(과) 종합평가표를 작성하여 교학처에 제출한다.	교학처, 학부(과) 인사위원회	
6	교원인사위원회 평가	교원인사위원회는 승진임용신청자의 제출서류를 평가하여 [별표33]교원 승진임용에 대한 교원인사위원회 평가표를 작성한다.	교학처 교원인사위원회	승진임용예정 일 2월 전까지 평가
7	총장 심의 요청	총장은 승진 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최종 승인한 후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다. 단, 총장이 가점을 부여하는 경우 [별표34] 총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총장	
8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승진임용 신청자에 대한 평가자료와 대학에서의 제반 활동 등을 참작하여 무기명 표결에 의하여 승진임용 동의 여부를 의결한다.	교원인사위원회	
9	교원 승진임용 제청	총장의 결재를 받아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승진임용을 학교법인에 제청한다.	교학처	

[별표28] <개정 2012.2.13>

교원 승진임용 신청서

승진소요최저연수 기간 중의 교수업적평가 백분율[%]				평균[%]
학년도/(%), 학년도/(%),	학년도/(%), 학년도/(%),	학년도/(%), 학년도/(%),	학년도/(%), 학년도/(%),	
실적평가 학년도 선택	()학년도, ()학년도, ()학년도, ()학년도,	()학년도, ()학년도, ()학년도, ()학년도,	()학년도, ()학년도, ()학년도, ()학년도,	()학년도 ()학년도
책임저자로 게재한 논문 제목	발표 년/월/일	발표기관	공동 연구자	
부문	평가 사항			인정점수(점)
교육/연수	1. 강의평가 설문조사 점수			
	2. 교수학습 방법 개발			
	3. 전문 학술서적 개발			
	4. 신규 교과목 개발			
	5. 교수 현장연수 일수			
	6. 장학금 유치 금액			
산학협력	1. 공공기관·대기업 수탁 연구보고서			
	2. 교외 수탁연구 보고서			
	3. 기술지도 실적 건수			
대학발전	1. 공공기관 우수사업 수주 건수			
	2. 공공기관 우수사업 제안서 신청건수			
	3. 학교 발전과 관련된 TFT 참여 건수			
	4. 본 대학 교육발전을 위한 연구 보고서(본 대학 위탁연구)			
논문/특허/ 공모/설계	1. 국제 전문학술지 논문, 국제특허 등록			
	2. 우수 학술지 논문			
	3. 국제특허 출원, 국내특허 등록			
	4. 국제현상설계 1등/입상			
	5. 국내 단체, 공공기관 공모전, 국내현상설계 1등/입상			
	6. 국내 비영리단체 또는 사기업 주관의 현상설계 1등/입상 또는 실용화된 디자인 작품 특허등록, 대외 유명전시회 초청작가로 출품			
	7. 창작 발표회, 국내외 계획 설계 관련 전시회 출품			
수상/공훈	1. 국제단체·국가·공공 단체의 수상			
	2. 교내 장기근속 수상, 국내 학술단체, 민간단체의 수상, 교내표창			
	3. 공공 단체의 장관급 이상 상을 지도학생이 수상			
실적 점수 합계				

상기와 같이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조교수, 부교수, 교수)로의 승진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소 속 :
 직 급 :
 생년월일 :
 성 명 : (인)

동양미래대학총장 귀하

1. 교육/연수 부문

항 목	실적 내용을 번호를 붙여서 상세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1. 강의평가 설문조사 점수	
2. 교수학습 방법 개발	
3. 전문 학술서적 개발	
4 신규 교과목 개발	
5. 교수 현장연수 일수	
6. 장학금 유치 금액	

2. 산학협력 부문

항 목	실적 내용을 번호를 붙여서 상세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공기관·대기업 수탁 연구보고서	
2. 교외 수탁연구 보고서	
3. 기술지도 실적 건수	

3. 대학발전 부문

항 목	실적 내용을 번호를 붙여서 상세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공기관 우수사업 수주 건수	
2. 공공기관 우수사업 제안서 신청건수	
3. 학교 발전과 관련된 TFT 참여 건수	
4. 본 대학 교육발전을 위한 연구 보고서(본 대학 위탁연구)	

4. 논문/특허/공모/설계 부문

항 목	실적 내용을 번호를 붙여서 상세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1. 국제 전문학술지 논문, 국제 특허 등록	
2. 우수 학술지 논문	
3. 국제특허 출원, 국내특허 등록	
4. 국제현상설계 1등/입상	
5. 국내 단체, 공공기관 공모전, 국내현상설계 1등/입상	
6. 국내 비영리단체 또는 사기업 주관의 현상설계 1등/입상 또는 실용화된 디자인 작품 특허등록, 대외 유명전시회 초청 작가로 출품	
7. 창작 발표회, 국내외 계획설계 관련 전시회 출품	

5. 수상/공훈 부문

항 목	실적 내용을 번호를 붙여서 상세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1. 국제단체·국가·공공 단체의 수상	
2. 교내 장기근속 수상, 국내 학술단체, 민간단체의 수상, 교내표창	
3. 공공 단체의 장관급 이상 상을 지도학생이 수상	

6. 기타

서술 내용

※기타 난에는 동료 교수와의 관계, 학과 및 학교에 대한 기여도 등 심의에 참고가 될, 교수님께 유리한 사항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별표29] <개정 2012.2.13>

승진임용을 위한 실적평가 세부기준

부분	평가 사항	인정점수 (점)
교육/연수	1. 강의평가 설문조사 점수에 따른 실적(조교수/부교수/교수)	100/150/200
	2. 교수학습 방법 개발 보고서 및 발표(교외/교내)	70/50
	3. 전문 학술서적 개발(2개 학년도 이상 채택하여 본인 강좌에 사용)	100
	4. 신규 교과목 개발(2개 학년도 이상 교내 개설 및 본인 운영)	30
	5. 현장연수 일수(조교수 8일, 부교수 16일, 교수 24일)	50
	6. 장학금 유치 금액 (매100만원 당, 최대 50점까지 인정)	3
산학협력	1. 공공기관·대기업 수탁 연구보고서	70
	2. 교외 수탁연구 보고서	50
	3. 기술지도 실적 건수	20
대학발전	1. 공공기관에 제안한 우수사업 수주 건수	100
	2. 공공기관에 제안한 우수 사업 제안서 신청건수	50
	3. 학교 발전과 관련된 TFT 참여 건수	50
	4. 본 대학 교육발전을 위한 연구보고서(본 대학 위탁연구)	30
논문/특허/공모/설계	1. 국제 전문학술지 논문, 국제특허 등록	150
	2. 우수 학술지 논문 (학술진흥재단 등재지, 동급 국제논문)	100
	3. 국제특허 출원, 국내특허 등록	50
	4. 국제현상설계 1등/입상	150/100
	5. 국내 단체, 공공기관 공모전, 국내현상설계 1등/입상	100/70
	6. 국내 비영리단체 또는 사기업 주관의 현상설계 1등/입상 또는 실용화된 디자인 작품 특허등록, 대외 유명전시회 초청작가로 출품	70/50
	7. 창작 발표회, 국내외 계획 설계 관련 전시회 출품	30
수상/공훈	1. 국제단체·국가·공공 단체의 수상	100
	2. 교내 장기근속 수상, 국내 학술단체, 민간단체의 수상, 교내표창	50
	3. 공공 단체의 장관급 이상 상을 지도학생이 수상	20

[별표30] <개정 2012.2.13>

승진임용을 위한 실적평가 세부기준 설명

- 교원의 공업계 및 비공업계의 구분은 최종학위를 기준으로 한다.
- 공동실적에 대해서 인정점수는 1인 100%, 2인 70%, 3인 50%, 4인 30%, 5인 이상 (100/전체인원)%으로 한다. 단, 2011학년도까지의 4인 이상 공동실적은 30%로 한다.
- 동일한 실적(특허 등록/출원, 사업 신청/수주)에 대해서는 1개의 상위 실적만 인정한다.
- 교외 발표 실적(논문, 특허, 입상, 수상 등)은 교명 표기가 된 경우에 인정한다. 단, 특허 등 교명 표기가 곤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교육 및 연수 부문

1. 강의평가 설문조사 점수평군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직급별로 최대 점수를 다르게 인정한다.

$$\text{인정점수} = \begin{cases} \frac{(\text{강의평가설문조사점수평군} - 3.0)}{2.0} \times \text{직위별 최대인정점수}, & \text{강의평가설문조사 점수평군} > 3.0 \\ 0, & \text{강의평가설문조사점수평군} \leq 3.0 \end{cases}$$

2.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하여 연구보고서를 제출하고 교내·외에서 발표하여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건수에 대한 1건당 50점의 점수를 인정하고, 전국전문대학 교수학습방법 연구대회에 입상한 경우에 한하여 1건당 70점을 인정한다.
3. 전문 학술서적 개발은 국내·외 출판사에 의해서 출판된 서적에 한해 본인 교과목의 교재로 2개 학년도 이상 사용한 교재에 대해 인정한다.
4. 신규 교과목을 개발하였거나 또는 특별한 형태의 사이버 강좌를 개발하였을 경우에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하여 인정한 경우에 본인이 교내 강좌로 2개 학년도 이상 개설하여 운영하면 1건당 30점의 점수를 인정한다.
5. “현장연수” 일수는 대학에 사전 신고를 한 경우에 한해 조교수 승진 시 8일 이상, 부교수 승진 시 16일 이상, 교수 승진 시 24일 이상에 대해 50점의 점수를 인정한다. 단, 매 학년도 유효 연수일자는 최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6. 외부로부터 장학금을 유치하였을 때 1백만원에 3점씩으로 환산하여 인정하고, 최대 50점까지 인정한다.

(2) 산학협력 부문

1. “공공기관 연구보고서”는 산학협력단을 통하여 공공기관, 국책 연구소, 대기업체 등과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점수를 인정한다.
2. “교외 수탁연구 보고서”는 산학협력단을 통하여 진행된 중소기업체와 연구의 경우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점수를 인정한다.
3. 공공기관 위탁에 의한 산업체 기술지도 또는 애로기술 지도의 실적에 대해 1건당 20점을 인정한다.

(3) 대학 발전 부문

1. “공공기관에 우수사업 수주 건수”는 학교사업이나 학부(과)의 사업 중에서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판단되는 우수 사업에 대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주한 경우 인정한다.
2. “공공기관에 제안한 우수 사업 제안서 신청건수”는 학교사업이나 학부(과)의 사업 중에서 학교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우수 사업에 대하여 공공기관에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안한 경우를 인정한다.

3. “학교 발전과 관련된 TFT 참여 건수“는 학교발전에 필요한 각종 TFT 팀에 참여하여 활동하고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공청회 등을 수행하여 참여가 확인될 수 있는 건수를 인정한다.
4. “본 대학 교육발전을 위한 연구보고서“는 본 대학의 위탁에 의해 수행되는 각종 연구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인정한다.

(4) 논문, 특허, 공모 및 설계 부문

1. “국제 전문학술지 논문“은 SCI, SSCI, A&HCI, SCI Expanded 논문집에 본 대학 재직 시에 제출하여 등재한 논문에 한하며, “국제 특허 등록“은 발명자로 본 대학 재직 시에 참여한 경우에 인정한다.
2. “우수 학술지 논문“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의 논문을 인정한다.
3. “국제 특허 출원, 국내 특허 등록“은 본 대학 재직자 명의로 국제 특허에 출원하거나 국내 특허에 등록한 경우에 인정한다. 단, 동일 특허에 대해 등록과 출원이 동일 직위에서 이루어진 경우 1개의 실적만 인정한다.
4. 국제공인단체, 국제 비영리 단체나 기업, 공공기관, 국영 또는 공사기업, 지방 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공모전에 입상 또는 국제 현상설계에서 입상한 경우에 인정한다.
5. 국내공인단체, 공공기관, 국영 또는 공사기업이 주관하는 공모전에 입상 또는 국내 현상설계에서 입상한 경우에 대해 인정한다.
6. 실용화된 디자인 작품의 디자인 관련 특허 등록, 국내 비영리 단체나 기업이 주관하는 공모전 또는 현상설계에서 입상, 또는 대외 유명 전시회의 초청 작가로 출품한 실적, 또는 국내 비영리단체, 대기업, 지방 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공모전에 입상한 경우에 대해 인정한다.
7. 창작 발표회를 한 실적이나 국내외 계획 설계 관련 전시회 출품에 경우에 인정한다.

(5) 수상 및 공훈 부문

1. “국제단체, 국가, 공공 단체의 수상“은 국제단체, 국가, 또는 공공 단체에서 수여하는 상을 받아 학교의 명예를 높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인정한다.
2. “교내 장기근속수상, 국내 학술단체, 민간단체의 수상, 교내표창“은 교내에서 10년 이상의 장기근속에 대한 수상, 국내 학술단체나 또는 민간단체 중에서 학교의 명예를 높인다고 인정되는 수상, 교내 표창에 한해 인정한다.
3. “공공 단체의 장관급 이상의 상을 지도학생이 수상“은 공공 단체에서 주관하는 학생 경진대회에서 지도 학생이 장관급 이상에 해당하는 상을 수여했을 때 인정한다.

[별표31]

교원 승진임용에 대한 학부(과) 인사위원회 위원 평가표

작성일자 : 년 월 일

피심사대상 교수의 소속	현 직급	성 명

평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과) 회의나 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며 학부(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 학과 업무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 교수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있다. - 대인관계가 원만하여 주변과 잘 화합하고 있다. - 대외 활동이 활발하여 학부(과) 또는 학교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 수업이나 학생지도에 대한 학생들의 평이 좋다. - 건강 문제로 교수활동에 지장을 준 적이 없다. 		
평가 결과	(조교수, 부교수, 교수) 승진 찬반 의견		
	승진 찬성		승진 반대
	[종합 의견]		

※ 교원 승진임용에 대한 학부(과) 인사위원회 위원 평가표 작성방법 및 결과활용

- 1) 표의 평가내용을 참고하여 승진 신청자에 대한 “승진 찬성“ 또는 “승진 반대“
난에 ○표로 기재하십시오.
- 2) 종합의견은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 3) 학부(과) 평가 결과는 우리대학 교원의 승진 시 찬반 의견만 반영됩니다.
- 4) 학부(과) 평가위원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승진 찬성“ 의견이 과반수인 경우
에는 학부(과)에서 승진 신청자의 승진에 동의하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 5) 학부(과) 평가위원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승진 찬성“ 의견이 과반수 미만인
경우에는 학부(과) 평가위원 회의를 개최하여 “승진 찬성“ 또는 “승진 반대“에
대한 토론 과정을 거친 후 결론을 도출하게 됩니다.
- 6) 기타 의문 사항은 교학처 교원인사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별표32]

교원 승진임용에 대한 학부(과) 종합평가표

평가 내용

상기와 같이 _____부(과)에서는 교원 _____의
 (조교수, 부교수, 교수)로의 승진임용을 (찬성/반대)합니다.

년 월 일

_____부(과) 인사위원회 위원장 _____ (인)

동양미래대학총장 귀하

[별표34]

총장 평가서

작성일자 : 년 월 일

피심사대상 교수의 소속	성 명

평 가 내 용		
가점		총 장 (인)

* 가점은 최대 50점까지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별표35] 삭제 <2012.2.13>

[별표35-1] <신설 2012.2.13>

연구실적물을 대체할 수 있는 산학협력실적물

산학협력실적물 구분		실적기준	연구실적물 대체 인정비율 (A)	가중치 (B)	인정환산율 (%)
기술이전		100만원당	2%	가	A×B
특허	국제	1건당	100%	나	A×B
	국내	1건당	50%	나	A×B
산업체 연구비 수혜		200만원당	2%	나	A×B
취업지도		취업자 수 1명당 (연평균)	5%	가	A×B

1. 기술이전 : 연구수행 결과로 발생된 기술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실시권을 허용하여 발생한 수입. 동양미래대학 총장 또는 동양미래대학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체결된 기술이전 계약만 인정. 기술이전료 입금시점 기준
2. 특허 : 연구수행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국내에 등록한 특허 건수. 특허는 출원일 및 등록일이 기재되어 있는 특허등록공보를 제출하며, 등록권자에 동양미래대학 또는 동양미래대학 산학협력단이 포함된 경우만 인정. 특허 등록일 기준
3. 산업체 연구비 수혜 : 동양미래대학 또는 동양미래대학 산학협력단 명의로 계약 한 각종 수탁(연구, 기술개발 등 포함, 정부재정지원사업에 따른 기업 대응투자액 제외)에 의한 연구비 수혜액. 연구비 입금시점 기준
4. 취업지도 : 교원 개인별 취업지도를 통해 취업시킨 실적. 해당부서에 취업실적으로 신고된 것만을 인정하며, 취업알선과 취업달성에 대해 각각 1/2을 인정한다. 취업일 기준
5. 가중치
 - 가 : 단독 수행의 경우 100%이며 참여자가 복수인 경우는 (100/전체참여자 수)%의 실적으로 한다.
 - 나 : 단독 수행(연구)의 경우 100%이며 2인, 3인, 4인 공동 수행은 각각 단독 수행(연구)의 70%, 50%, 30% 실적으로 하며, 5인 이상인 경우는 (100/전체수행자 수)%의 실적으로 한다.

[별표36] <개정 2012.2.13, 2012.3.1>

교원 임용 계약서

학교법인동양학원 이사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_____(이하 “을“이라 한다)은 학교법인동양학원 정관 제39조의2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동양미래대학(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의 교원 (신규)임용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임용직급)

“갑“은 “을“을 “본 대학“의 _____로 임용한다.

제2조(계약기간)

“을“의 임용 계약기간은 “갑“이 임용한 기간으로 한다.

제3조(보수)

- ① “을“의 계약기간의 보수는 연_____만원으로 하며 매월 균등 분할한 금액을 본 대학의 급여 지급일에 지급한다.
- ② “을“의 보수는 매 학년도별로 정해지는 교직원 보수 지급 지침에 따른다.
- ③ 연봉 외 초과수당, 기타 비정규적인 성격의 수당은 “을“에게 별도 지급한다.
- ④ 본 대학에서 지급받는 보수에 대한 세공과금은 “을“의 보수에서 공제 납부한다.

제4조(책임시수)

- ① “을“의 책임 강의시수는 본 대학에서 정한 규정으로 한다.
- ② “을“은 책임 강의시수 외에 본 대학에서 정하는 초과시간을 담당하여야 한다.

제5조(근무부서)

- ① “을“은 본 대학 _____에 근무한다.
- ② 본 대학의 사정에 따라 총장은 “을“의 근무 부서 이동을 명할 수 있다.

제6조(업적 및 성과 등)

“을“은 본 대학과 체결한 임용 계약기간 중 본 대학 제 규정에 의한 _____(해당교원별로 아래 사항에서 청색부분만 선택하여 기입) _____ 등의 업적 및 성과를 수행하고 본 대학 교수업적평가규정에 의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1. 일반교원 : 교육분야, 연구분야, 봉사분야, 산학협력분야의 업무 및 본 대학이 요구하는 추가의 업무
2. 산학협력중점교원 : 교육분야, 봉사분야, 산학협력분야의 업무 및 본 대학이 요구하는 추가의 업무
3. 산업체경력교원 : 교육분야, 봉사분야, 산학협력분야의 업무 및 본 대학이 요구하는 추가의 업무(보직은 제외)
4. 실습교원 : 교육분야, 봉사분야, 산학협력분야 업무를 담당하고 본 대학이 요구하는 추가의 업무(보직은 제외)

